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순기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96
------	------

발의일자 : 2024. 2. 2.

발 의 자 : 정순기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장규권 의원

## 1. 제안이유

지역 내의 공중케이블 및 폐사선 난립 문제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공중케이블정비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마. 공중케이블정비추진단의 기능 및 운영(안 제6조 및 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4. 2. 5. ~ 2024. 2. 13.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공중케이블정비추진단”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된 주요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 시 현장평가
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중케이블정비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정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추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단장은 주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부서 과장과 정비대상 구역 동장 등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비대상구역 동장 추천 주민 10명 이내
  2. 케이블정비사업 대표사업자 2명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⑦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⑧ 단장은 정비추진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진단이 미리 정한 위원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동별 공중케이블 정비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추진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추진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준용) 추진단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3.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